(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I. ⁶ B41J 5/30	(11) 공개번호 특1996-0021544 (43) 공개일자 1996년07월18일
(21) 출원번호 _(22) 출원일자	특 1995-0049645 1995년 12월 14일
(30) 우선권주장	94-310330 1994년12월14일 일본(JP)
(71) 출원인	95-323320 1995년12월12일 일본(JP) 가부시끼가이샤 세가 엔터프라이지즈 이리마지리 쇼우이찌로
(72) 발명자	일본국 도꾜도 오따구 하네다 1쪼메 2방 12고 오하라 마고또
(74) 대리인	일본국 도꾜도 오따구 하네다 1쪼메 2방 12고 가부시끼가이샤 세가 엔터프 라이지즈 내 자시기, 그연화
(74) 내디인	장수길, 구영창
심사청구 : 없음	

(54) 프린터 장치 및 그것에 이용하는 잉크 카트리지

요약

모방품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는 프린터 장치 및 그것에 이용하는 잉크 카트리지를 제공한다. 교환 가능한 잉크 카트리지 (50)으로부터 공급되는 잉크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프린터 장치 (10)이다. 장착되는 잉크 카트리지 (50)의 소정 부분을 독해하는 독해 수단(30)이 설치되고, 그 독해 결과에 의거하여 잉크 카트리지 (50)의 소정 부분에 특정 표시 (54)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소정 부분에 특정 표시 (54)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만 인쇄가 허가된다. 잉크 카트리지 (50)은 독해 수단(30)에 의해독해되는 외표면이 소정 부분에 특정 표시 (54)가 눈으로 볼수 있게 표시되어 있다.

대표도

⊊3

명세서

[발명의 명칭]

프린터 장치 및 그것에 이용하는 잉크 카트리지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 형태에 의한 프린터 장치의 사시도,

제2도는 제1실시 형태에 의한 프린터 장치에서 이용하는 잉크 카트리지의 장착 방법의 설명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 형태에 의한 프린터 장치에의 잉크 카트리지의 장착 방법의 설명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 형태에 의한 프린터 장치에 따르는 잉크 카트리지의 소정 부분의 독해 방법 의 설명도,

제5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 형태에 의한 프린터 장치의 동작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교환 가능한 잉크 카트리지로부터 공급되는 잉크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프린터 장치에 있어서, 장착되는 상기 잉크 카트리지외 소정 부분을 독해하는 독해 수단과, 상기 독해 수단에 의한 독해 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소정 부활에 특정 표시가 존재하는지외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을 갖고, 상기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소정 부분에 상기 특정 표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인쇄물 허가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프린터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독해 수단은 상기 잉크 카트리지를 장착할 때의 이동시에 상기 소정 부분을 독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독해 수단은 상기 잉크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인쇄할 때의 이동시에 상기 소정 부분을 독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 장치.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저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표시는 이것을 상기 잉크 카트리지에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권원(正當權原)을 갖는 자 이외의 자가 사용한 경우에 그 표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표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표시는 등록 상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 장치.

청구항 6

프린터 장치에 장착되고, 상기 프린터 장치에 잉크를 공급하는 잉크 카트리지에 있어서, 상기 프린터 장치에 장착되었을 때, 외표면의 소정 부분이 독해 수단에 의해 독해되고, 상기 소정 부분에 특정 표시가육안으로 볼 수 있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카트리지.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열전사에 의해 인쇄되는 잉크 리본과, 상기 잉크 리본이 감겨지는 롤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카트리지.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액상의 잉크와, 상기 잉크를 분사하는 노즐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카트리지.

청구항 9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표시는 이것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권원을 갖는 자 이외의 자가 사용한 경우에 그 표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표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카트리지.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표시는 등록 상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카트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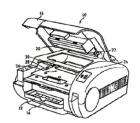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외표면에 SEGA 표시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카트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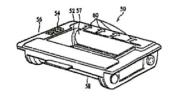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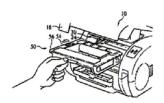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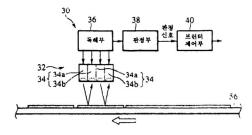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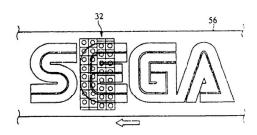
도면3



도면4-a



도면4-b



도면5

